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가단1013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9. 7.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4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09.6.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4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09. 6.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율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최용호

별지